

의안번호	2218181
의 퇴 인	박수영 의원
회 답 일	2026.06.15.
추 계 번호	26E2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8조(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수출용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수출용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 － (대상)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수출용 중고품 － (공제율) 취득가액의 10/110 － (공제대상 매입세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수 출용 중고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수출용 중고품의 매입세액을 뺀 금액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8조(재활용폐자 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수출용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8조)
 -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수출용 중고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참고) 현행 제도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0/110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수출용 중고품의 취득가액, 해당 수출용 중고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므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수출용 중고품의 취득가액, 수출용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액 또는 매입세액불공제액 등과 관련한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 (참고) 중고품으로 신고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금액은 2025년 158억 달러이며, 이 중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로 신고된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출신고 금액은 67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¹⁾
 - 다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수출품목(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 각각의 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1) 이는 중고품(단,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는 미포함)으로 수출신고된 금액중에서 HSK 세번으로 구분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된 것으로, 개정안의 실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수출용 중고품의 수출신고 금액

(단위: 억 달러)

	2023	2024	2025
전체 수출용 중고품 (※ 무역통계 기준, 물품상태 코드를 'O(중고품)'으로 수출신고한 건) ¹⁾	101	107	158
－ 재활용 폐자원 ²⁾ 및 중고자동차	49	53	91
－ 그 외 품목	52	55	67

주: 1) 신품과 중고품이 혼재된 건(물품상태 코드 'M')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 재활용 폐자원 항목의 경우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 분류되는 HSK 세번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출

1. 중고품(단,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는 미포함)으로 수출신고된 금액중에서 HSK 세번으로 구분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된 것으로, 개정안의 실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관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